#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65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문진석・박정현・윤종군

복기왕・윤호중・장종태

박성준 • 박용갑 • 이정문

김문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 소유 원칙으로 하여 그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된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도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 의3 신설).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 본법」 제38조에 따라 위탁받아 공급하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 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del>8</del> ) ①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
	른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
	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따
	라 위탁받아 공급하는 철도시
	설유지보수 용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